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27호

「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(안 제4조)
- 라.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위탁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- 바. 비밀 준수 의무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 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- 전화번호: 033-640-4116
 - 팩스번호: 033-640-4070
 - 전자우편(이메일): jhyoon93@korea.kr

붙임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스토킹"이란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 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 - 2. "피해자"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·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2.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3.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5조(사업 추진 등)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・운영
 - 2.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
 - 3.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·법률·주거·자립 지원
 - 4.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
 - 5.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 체와의 협력 지원
 - 6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

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 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	
○ 성명(단체명) :					
○ 주		소 :			
○ 연	락	처 :			

제ㆍ개정안 내용	의	 견	비고